

## 다솜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(주야간보호)

### 1.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
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(보호자)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,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을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1) 계약기간 :** 장기요양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**2) 계약목적 :**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.

- ①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생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### 3)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센터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,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한 재가급여서비스에 대한 비용액(고시액)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
-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
-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| 구분  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등급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월 한도액  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   | 1,151,600 | 643,700 |
| 본인부담금내역 | 기초수급자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0% 부담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| 차상위계층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경감 9%, 6% 부담 |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| 일반수급자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15% 부담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

### ④ 주야간보호 등급,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| 시간               | 등급     | '24년 수가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3시간 이상<br>6시간 미만 | 1등급    | 39,810  |
|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36,850  |
|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34,020  |
|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32,470  |
|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30,920  |
|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30,920  |
| 6시간 이상<br>8시간 미만 | 1등급    | 53,360  |
|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49,420  |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45,620 |
|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44,070 |
|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42,500 |
|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42,500 |
| 8시간 이상<br>10시간 미만  | 1등급    | 66,360 |
|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61,480 |
|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56,760 |
|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55,210 |
|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53,640 |
|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3,640 |
| 10시간 이상<br>13시간 미만 | 1등급    | 73,110 |
|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67,720 |
|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62,570 |
|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61,000 |
|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59,450 |
|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3,640 |
| 13시간 초과            | 1등급    | 78,400 |
|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72,630 |
|                    | 3등급    | 67,100 |
|                    | 4등급    | 65,540 |
|                    | 5등급    | 63,990 |
|                    | 인지지원등급 | 53,640 |

#### 4)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#####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할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권리
-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
-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(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)할 권리
-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
-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
- 급여비용 및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

#####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.
-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.
-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#### 5)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

#####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
-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-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② 수급자의 의무
  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 -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 -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
- ③ 수급자의 권리
  -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,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  -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
  -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  -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
  -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

## 6)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센터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단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